

충청남도

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
**01****주택** [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, 별표1]

2021.10.19. 시행

구 분	거래 금 액	상한요율	한도액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
	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
	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-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-
임대차 등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-
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
	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3	-
	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-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-

02**오피스텔** [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1호, 별표2]

구 分	상 한 요율	비 고
매매·교환	1천분의 5	전용면적 85m ² 이하로 일정설비(입식부엌, 화장실, 욕실 등)를 갖춘 오피스텔
임대차 등	1천분의 4	

03**주택 외(토지, 상가 등)**

[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2호]

거래금액의 1천분의 90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

04**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**

가. 임대차 거래금액의 계산[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]

-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{보증금 + [월 단위의 차임액 × 100]}

다만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{보증금 + [월 단위의 차임액 × 70]}

나. 실비 :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: 1건당 1,000원

증명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: 해당증명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공부열람 수수료

다. 중개보수는 한도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

- 중개보수 한도액 : 거래금액 × 상한요율, [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]

라. 중개보수에 「부가가치세」는 별도임

**충청남도**